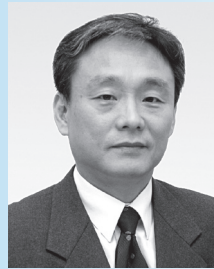


우리나라 상속세제 현황과 개선과제



이 현 석

대한상공회의소 전무이사

目 次

I. 상속세제 개선의 필요성

II.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III. 맺음말

I. 상속세제 개선의 필요성

현 정부 출범 이후 투자환경 개선과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세제 개선이 이루어졌다. 법인세율이 25%에서 22%로 낮아졌고 내년에는 20%로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되었다.

정부의 이 같은 감세 정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상속세제는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크다. 정부의 상속세율 인하 법안은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상속세율 인하 또는 폐지를 통해 기업의 욕을 북돋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부합되지 않는 것이다.

현재 상속·증여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7% 정도로 그리 높다고 할 수 없다. 반면에 납세를 해야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결코 부담이 적지 않다. 과도한 상속세 부담은 새로운 투자보다는 배당을 통한 성장잠재력의 저하를 불러오고 기업승계를 포기하는 부작용까지 낳고 있다.

환율불안과 물가상승, 세계 경제 둔화 가능성 등 대내외 경영환경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기업 의욕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속세제의 개선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본다.

II. 우리나라 상속세제의 현황과 개선과제

1.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완화 및 세율인하

가. 현황

우리나라 상속·증여세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로 2000년 이후 12년째 동일한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상속세 현실화를 위해 지난 2008년 10월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을 완화하는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동 개정 법률안은 기획재정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국회 계류 중이다.

정부의 개정 법률안은 최저세율 구간을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하며 10~50%인 세율을 6~33%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1〉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구조 변화

~1996		1997~1999	2000~
〈상속세〉		과세 구간 및 세율 단일화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50억원 이하 40% · 50억원 초과 45%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 10억원 이하 30% · 30억원 이하 40% · 30억원 초과 50%
5천만원 이하	10%		
2억 5천만원 "	20%		
5억 5천만원 "	30%		
5억 5천만원 초과	40%		
〈증여세〉			
2천만원 이하	10%		
1억 5천만원 이하	20%		
3억원 이하	30%		
3억원 초과	40%		

〈표 2〉 정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 법률안(국회 계류 중)

현 행		⇒	개 정 안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6%
1~5억원	20%		5~15억원	15%
5~10억원	30%		15~30억원	24%
10~30억원	40%		30억원 초과	33%
30억원 초과	50%			

나. 현행 세제의 문제점

2000년 이후 10년간 부동산 가격과 물가는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이 조정되지 않아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

은 상속·증여세가 국내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에서도 잘 알 수 있다. 국세 대비 상속·증여세의 비율은 2002년의 0.82%에서 2008년 1.66%로, GDP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은 2002년 0.12%에서 2008년에는 0.27%로 각각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표 3〉 연도별 상속·증여세 비율변화(%)

연도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국세 대비	0.82	1.15	1.45	1.47	1.73	1.76	1.66
GDP 대비	0.12	0.17	0.21	0.22	0.26	0.29	0.27

높은 상속세 부담은 기업 의욕을 떨어뜨리고 도전적 기업이 정신을 감퇴시킨다. 적극적인 투자와 경영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면 상속 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재투자자를 통한 기업 가치 제고보다는 배당을 선호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엄격한 상속세제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걸림돌로 작용하여 경쟁력 있는 장수기업의 탄생을 어렵게 한다.

우리나라 상속세율 또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국가 간 자본과 노동의 이동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세율은 국부의 해외유출을 초래하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잠식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거나 유사한 나라로는

네덜란드(68%), 프랑스(60%), 독일(50%), 일본(50%) 등이 있다. 그러나 일본을 제외한 이들 나라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친인척도에 따라 차등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즉 상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직계상속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¹⁾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우리나라와 일본의 상속세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특히 최대주주 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10~30%의 할증평가를 하고 있다. 이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65%에 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주식을 처분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지분율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어 현행 세제 하에서는 경영권을 승계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4〉 상속세 최고세율 국제비교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직계상속 최고세율
한국	50%	50%
일본	50%	50%

1) 네덜란드 : 27%, 프랑스 : 40%, 독일 : 30%.

국가	상속세 최고세율	직계상속 최고세율
프랑스	60%	40%
영국	40%	40%
독일	50%	30%
네덜란드	68%	27%
노르웨이	30%	20%
대만	10%	10%
이탈리아	8%	4%

(*) 미국의 경우 2010년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한 바 있으며 2011년부터는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개정 법안이 현재 국회 계류 중임

〈표 5〉 최대주주 주식 상속·증여에 대한 할증평가율

지분율	중소기업	대기업
지분율 50% 이하	10%	20%
지분율 50% 초과	15%	30%

(*) 단,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서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할증평가를 배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한편 상속세제는 모든 나라에 존재하는 보편적인 세제가 아니며 많은 나라들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훼손하고 기업승계를 저해하며 국부의 해외 유출을 초래하는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과 같은 나라들은 이미 상속세를 자본이득세²⁾로 대체하였으며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은 상속세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다.

미국은 「경제성장과 감세조정」 법안에 따라 2002년부터 2009년에 걸쳐 상속세율을 50%에서 45%로 인하하였으며 2010년 한 해 동안 한시적으로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인의 유산 처분 시점에 자본이득세를 부과토록 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상속세가 다시 부활되나 종전보다 낮아진 35%의 세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논의하고 있다. 대만은 과거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우리나라와 같았으나 2009년 1월부터 10%로 대폭 인하되었다.

〈표 6〉 주요국의 상속세 부담 완화 동향

상속세 면세	자본이득세로 대체	상속세율 인하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스웨덴 등	대만 : 50% → 10%

2) 자본이득세란 부동산, 주식 등 자본자산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세금으로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가 이에 해당함.

다. 개선과제

엄격하고 경직적인 상속세제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세계적인 상속세 개선 추세에 맞추어 우리도 빠른 시일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의 완화와 세율 인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상속세제 완화를 반대하는 근거로 상속세제가 부의 세습과 집중을 막고 소득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든다. 그러나 우리나라 상속세 및 증여세의 규모는 약 2조 7,700억원(2008년 기준)으로 GDP 대비 0.27%, 총국세 대비 1.66% 수준이다. 이처럼 GDP나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는 점에서 상속·증여세가 소득재분배나 평등의 실현이라는 취지를 충분히 살리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율 인하가 부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이른바 '부자 감세'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각이 바뀔 필요가 있다.

상속세율 인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상속세 부담이 감소하면 기업 의욕이 높아져 투자 확대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속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율 인하가 재정건전성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지나치게 높은 상속세율이 납세자의 심리적 저항을 불러 변칙적인 조세회피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세계 정상화는 오히려 숨은 세원의 양성화를 통한 세수 증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도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상속세는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재산에 다시 과세하는 중복과세이며 상속 시점에 과세하게 되므로 미 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이다. 따라서 상속인이 유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며 합리적일 수 있다.

〈표 7〉 상속세 폐지국의 자본이득세 과세시기

과세시기	국가
상속 시점	캐나다
상속인의 유산 처분 시점	호주,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스웨덴

(*) 포르투갈의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상속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속인의 유산 처분 시점에 과세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재산 상속 시점에 과세

2. 기업상속공제 제도 확대

가. 현황

1960~1970년대 산업화의 주역이었던 창업 1세대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 시작하면서 성공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해지고 있다. 그동안 축적된 경영노하

와 독자적 고유 기술이 승계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으로 손실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기업상속공제액이 1억원에 불과해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후 기업승계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공제 금액

을 높이고 요건도 완화하는 등 제도를 점차 개선해가고 있다.

먼저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경우 2007년까지는 최대 1억원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가업상속재산액의 20%를 30억원 한도 내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였다. 2009년부터는 가업상속공제율을 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높이고 공제금액 한도도 30억원에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60~100억원으로 차등, 확대³⁾하였다.

가업상속공제 대상도 확대되어 왔다. 2008년의 경우 피상속인이 최소 15년 이상 중소기업을 경영했을 때에 한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09년에는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끔 완화되었다. 또한 올해부터는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고용 요

건을 충족한 매출액 1천 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⁴⁾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함에 따른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문제를 일부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법인가업에 대한 최대주주 지분을 요건도 올해부터 완화되었다.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 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의 주식과 합하여 발행주식총수의 30%(비상장법인의 경우 50%) 이상을 보유한 법인이다. 이는 작년까지 상장법인, 최대주주 지분율 40% 이상이던 법인가업의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표 8〉 우리나라 연도별 가업상속공제 제도 변화

구분	2008	2009	2010	2011~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재산가액의 20% 30억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속재산가액의 40% 60~100억원 한도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별 차등적용 (10~15년) 60억원, (15~20년)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가업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지분요건 : 40%(상장) · 50%(비상장)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지분요건 : 40%(상장) · 50%(비상장)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또는 매출액 1천 5백억원 이하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 1.2배 이상 지분요건 : 30%(상장) · 50%(비상장) 이상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기업에 대해 10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즉 가업승계 후 10년 내 상속 시점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⁵⁾하거나 주식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면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가업상속공제

3)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 60억원, 15년 이상일 경우 80억원, 20년 이상일 경우 100억원을 가업상속공제 금액 한도로 함.

4) 상속 후 10년간 정규직 근로자수 평균이 상속직전연도의 1.2배 이상이어야 하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됨.

5) 가업승계 후 5년간 상속 시점 가업용 자산의 10% 이상을 처분할 경우에도 상속세 전액을 추징함.

제도는 꾸준히 보완되고 있으나 여전히 중소기업들은 기업상속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아직도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세계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상속공제 제도 또한 독일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에 비해 경직적이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과 일본의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후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 제도 중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해보고자 한다.

나. 주요 외국사례

1) 독일

독일의 경우 과거 기업상속공제율이 35%에 불과했으나 2009년부터 세제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사업용 자산이나 최대주주로서의 지분율이 25% 이상인 사장·비상장주식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의 85~100%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달리 상속공제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 규정이 없다.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하는데 사용인의 수보다 사용인에게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상속받은 기업을 5년간 영위하면서 그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합계가 상속 당시 급여 지급액의 400% 이상일 경우 상속재산의 85%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또 상속받은 기업을 7년간 계속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지급한 급여 합계가 상속 당시 급여 지급액의 700% 이상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100%를 공제하여 상속세 납부 의무를 완전 면제하고 있다.

이러한 고용 유지 요건은 2010년 들어 완화된 것이다. 2009년의 경우에는 상속받은 기업을 7년간 계속하면서 7년 동안 지급한 급여 합계가 상속 당시 급여 지급액의 650% 이상이 되어야 85%의 공제율을 적용

받았다. 그리고 상속받은 기업을 10년간 계속하면서 10년 동안 지급한 급여 합계가 상속 당시 급여 지급액의 1000%이 되어야 10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독일도 공제 혜택을 받은 이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고 있으나 전액 추징 제도만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분 추징 제도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즉,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은 후 5년 또는 7년 동안 기업을 유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제받은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지만 급여 합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급여 합계가 미달한 부분만큼만 안분하여 상속세를 추징한다.

2) 일본

일본의 경우에도 최근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지원을 크게 확대하였다. 종전에는 비상장주식가액의 1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였으나 2008년 10월부터 상속세 납세유예 특례 제도를 신설하였다. 상속세 납세유예 특례 제도란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에 대해 비상장주식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세금 납부를 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까지 유예하는 제도인데 이 때 고용 유지, 상속인 지분 보유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유예된 상속세액 전액이 면제된다.

상속세 납세유예는 피상속인이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자 주식과 합하여 지분율이 50%를 초과하는 기업상속에 대해 적용되며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인이 대표자로 재직하면서 고용의 80% 이상, 지분 100%를 유지하고 그 이후 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식을 보유할 경우 유예세액이 면제된다.

기업 상속 이후 5년간 상속인의 대표자 지위 유지, 고용·지분 유지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유예된 상속세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5년 이후 상속인이 상속받은 지분을 양도할 경우에는 지분 양도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만 상속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상속세 납세유예 특례 혜택은 승계대상 회사 주식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가능

하나 우리나라처럼 공제 금액 자체에 대해 한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 규모가 크다고 해서 불리한 것은 아니다.

〈표 9〉 한·독·일 기업상속공제 제도비교

구분	한국	독일	일본	
적용 대상 주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지분율 30% 이상) · 비상장주식(지분율 5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주식(지분율 25% 이상) · 비상장주식(지분율 2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상장주식(지분율 50% 초과) 	
세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속재산의 4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 가업승계 전 사업영위 기간에 따라 차등적용 (10~15년) 60억원 (15~20년)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간 요건 충족) 상속재산의 85%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7년간 요건 충족) 상속재산의 100%를 과세가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식과세가액의 80%에 해당하는 상속세 납세유예 * 승계대상 회사 주식총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만 납세유예 적용 	
사 후 관 리	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년 내 요건 미비 시 전액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또는 7년 내 기업 양도 시 전액 추징 · 5년 또는 7년간 지급 급여 합계 요건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미달한 부분만큼 안분하여 추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내 요건 미비 시 유예세액 전액 납부 · 5년 이후 사망 시까지는 주식 양도비율에 따라 유예세액 안분하여 납부 · 상속인 사망 시까지 주식 보유하면 유예세액 면제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업용 자산 80% 이상 유지 (5년간은 90% 이상 유지) · 상속인 지분 보유 · 상속인 대표이사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7년) 간 기업을 종료하거나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 것 · 5년(7년) 간 지급 급여 합계가 상속 당시 급여 합계의 400%(700%) 이상일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의 80% 이상 유지 · 상속인 지분 보유 · 상속인이 대표자일 것

다. 개선과제

독일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 제도의 개선과제를 도출해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기업상속공제율의 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기업상속공제율은 현재 40%로 독일의 85~100%, 일본의 80%의 절반 이하 수준이다. 다만 독일과 일본의 경우에는 가업승계 이후 고용을 일정 규모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 40%의 기업상속공제율을 기본공제율로 하되 고용의 유지 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가업승계 이후 근로자의 고용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기업상속공제 금액 한도 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가업승계 전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 금액 한도를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이는 기업상속 이후 기업의 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

한 일정 금액의 공제한도를 규정한 것은 규모가 큰 기업들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세제지원 금액에 대한 한도 제한 규정 자체가 없으며 일본은 승계대상회사 주식총수의 3분의 2까지 제한을 하고 있으나 금액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 규모에 따른 차등 요인이 되지 않는다.

셋째, 가업승계 이후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상속세 전액을 추징하고 있는데 이는 독일,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도 현행의 전액 추징 방식에서 감소한 자산이나 지분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추징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Ⅲ. 맺음말

편법 증여나 상속이 사회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불법, 위법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나 지나치게

경직적인 상속세제가 납세자의 순응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편법을 불러온다는 점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도한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재산의 현금화, 불요불급한 소비지출의 증대, 국부의 해외 유출 등은 국가 경제 전반의 손실로 이어진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상속세제는 부의 재분배를 통한 양극화 해소와 사회 형평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기업의 의욕을 떨어뜨리고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부의 대물림은 인간의 본질적 동기로서 어느 정도 이를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상속·증여세제의 운영을 통해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갖춘 장수기업의 탄생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아무쪼록 금년에는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상속세율 인하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 아울러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이 크게 확대되어 우리나라에도 작지만 강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 ☺